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7. 29.(목) / 총 5매(본문2, 참고3)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 당 자	• 과장 배성호, 사무관 신익승, 주무관 장지애 • ☎ (044) 201-3338, 3347	
공동 배포	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처	담 당 자	• 처장 윤봉중, 전세보증팀장 이민근, 차장 권혁 • ☎ (051) 955-5721, 5792	
	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비서실	담 당 자	• 실장 문석, 언론팀장 이용승, 차장 이양선 • ☎ (051) 955-5431, 5613	
보 도 일 시		2021년 7월 3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

-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 · 신청 -

-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, 사장 권형택)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*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**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* (임대보증금보증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
- ** (전세보증금반환보증)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
-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,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.

* 임대보증금보증(임대인 가입)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%, 임차인이 25%를 부담하며, 전세보증금반환보증(임차인 가입)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

○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다만,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.

※ (예시) 임차보증금 3억원(APT)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,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,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의 환불 보증료
=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/365
= 1억원 x 0.128% x 270일/365일 = 94,680원

* 다만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

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, 임차인은 HUG 누리집(인터넷보증, khig.khug.or.kr)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,

○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.

- 아울러,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익승 사무관(☎ 044-201-3338),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
개인보증처 이민근 팀장(☎ 051-955-57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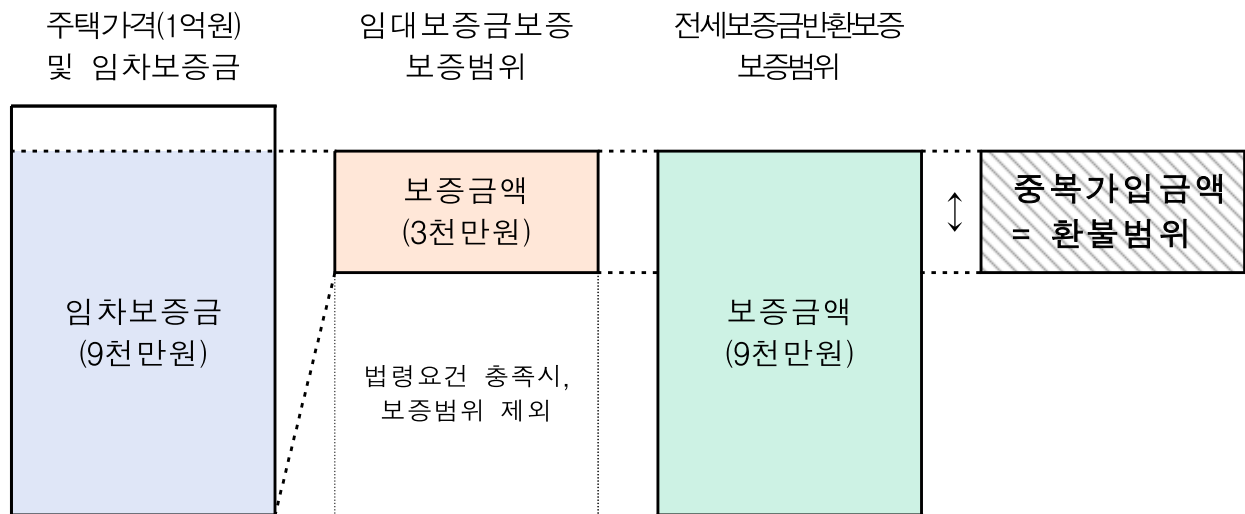
보증 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방안 [안]

◆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 시,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·중복기간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환불

- $\text{환불보증료} = \text{보증 간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} \times \text{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 중복일수}/365$

□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(환불범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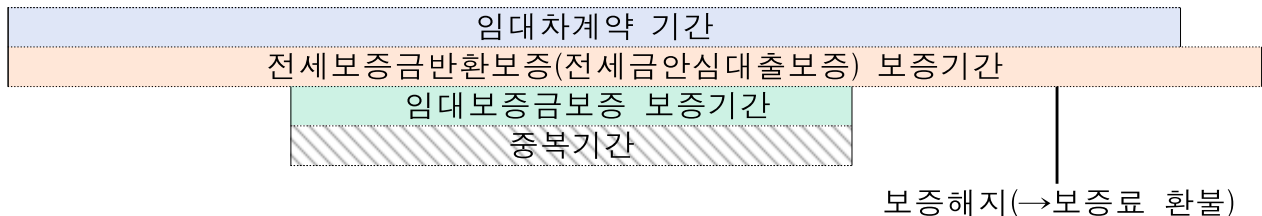
- (예시) 주택가격 1억원, 임차보증금 9천만원인 공동주택에 대한 각 보증의 보증 범위 및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



- *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 가능

□ 보증료 환불시점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(전세금안심대출보증)이 해지되는 시점에 환불



- * 전세금안심대출보증(반환보증+대출보증)은 반환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서 보증기간 중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이상 반환보증 중도해지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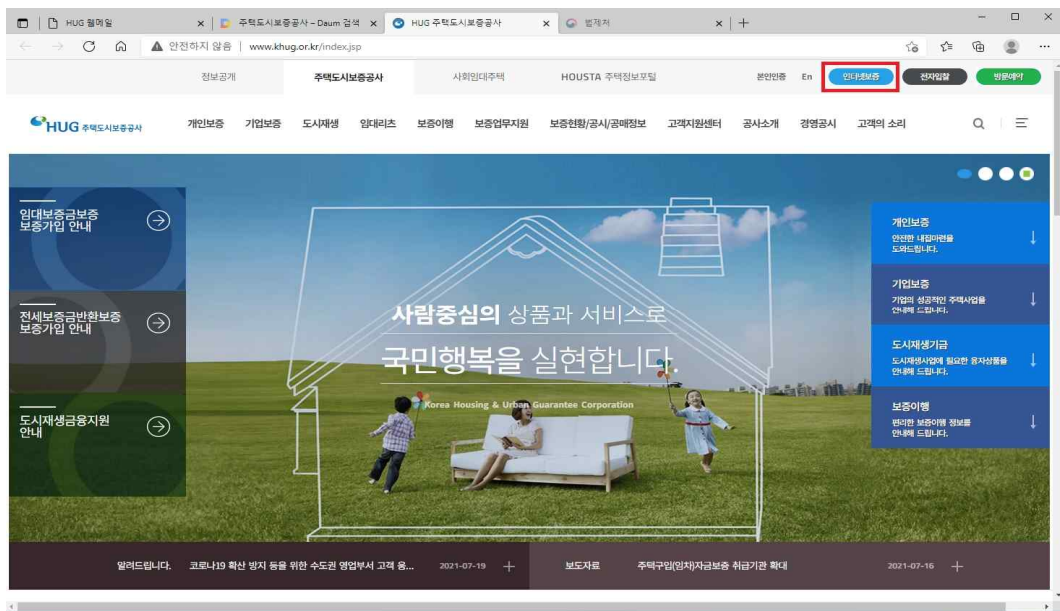
참고 2

HUG 홈페이지 보증 중복가입 확인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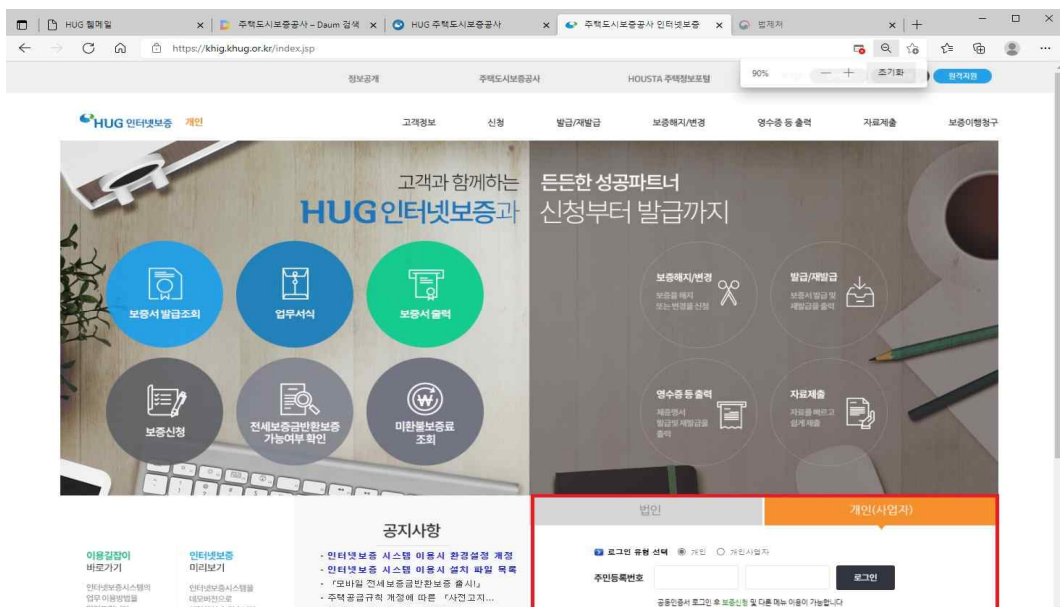
□ (조회시스템 경로) HUG 홈페이지 - 인터넷보증 - 고객정보 - “보증 중복가입 확인”

□ (조회방법) 아래 기재된 순서로 접속하여 조회

① HUG 인터넷보증(HUG 홈페이지 우측 상단) 접속



② 공동인증서로 HUG 인터넷보증 로그인



③ 화면 상단에 위치한 “고객정보” 중 “보증 중복가입 확인”

